

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가단53438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18.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2. 21. 접수 제842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선영

## [별지 목록]

##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6층  호 59.960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대 46937.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6937.5분의 44.6536

##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 2. 소외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와 ① 2017. 11. 7.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D, 보증금액 162,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6.(그 후 2022. 2. 18.까지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제1보증이라 합니다.), ② 2017. 11. 7.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E,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6.(그 후 2022. 2. 18.까지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제2보증이라 합니다.)를 각 발급해 주어, 소외 회사가 소외 F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각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하였습니다.

나. B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및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는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22. 6. 9.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210,190,588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입니다.

마.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채무자는 원고가 지출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1,066,436원입니다.

바. 채무자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건의 경우 채무자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1,809,110원입니다.

### 3. 사해행위취소

#### 가. 사해처분행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인 B는 소외 회사가 재무상황 악화 및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하자,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인 경기도 평택시 G건물 H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21. 12. 21.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합니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 또는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때 등의 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행위가 소외 회사의 부실화 시점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 다.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사해행위 결과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충분하고,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하는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B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여 원고의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

#### 라. 사해행위성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내용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부실 발생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로부터 구상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내

지 상실을 초래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B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이자 배우자인 피고에게도 그 사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각 구하고자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